

의정부지방법원 2018. 7. 20 선고 2018가단814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7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임야 2,952m²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6. 8. 4. 접수 제302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박종환

별지